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22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1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12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12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12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12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12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12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12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2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2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2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2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2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1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1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1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12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12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12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12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1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2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12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12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1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1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1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12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1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1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12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13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13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13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1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13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1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13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13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1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13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13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1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1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13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1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13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13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13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13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13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13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1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13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13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1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1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13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13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13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13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13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13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13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13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13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13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13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13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13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13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13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13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13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13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13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14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14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14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14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1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1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14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14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1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14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1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4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4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4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4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4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4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5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5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5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5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6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6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6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6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6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1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1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1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6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1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16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1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6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7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17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17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7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7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1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7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7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17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17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17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7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17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7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7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17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1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17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7

(10시48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

- 의)(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6.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87.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소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7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속행하셔서야 된다니까 좀 죄송하기는 한데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라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차관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하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이번 달 안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 등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일 발표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초과세수 약 19조 원 중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마련 중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책에 추가 저리 대출과 바우처, 소비쿠폰 등 정책 지원에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굳이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면적당 입장 제한 등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업종별 갈라치기 지원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또다시 이분들에게 단순 정책적인 지원만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외 업종 지원대책에 반드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 대상 업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확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손실보상, 영업 제한이라든지 영업 금지 그걸 통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얻은 업종에 대해서 피해액에 비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그 방안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현금 지원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정일영 위원**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월, 수, 금까지 마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것은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돼서 정말 수요일까지 한 번은 다 봐야 금요일 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소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께서는 관세법 제22번 항목부터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정부안입니다.

현행 관세법에서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요, 1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최근 원산지위원회의 개최 및 안전심의 실적이 저조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원산지확인위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실제 운영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저희도 폐지하려고 하고요. 대신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기능들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2번은 합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9페이지입니다.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현재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 일부 통계만 사전정보공표 방식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국가통계로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세 등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관세법에 마련하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만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통계를 품목별, 국가별로 과도하게 세분화하여 공개하는 경우 실효세율 공개 등에 의한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제소 혹은 외국 관세 당국의 관세조사가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관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통계연감 등이 있는데요. 관세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관세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기해 주신 관세통계 공개할 때 공개의 범위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통계청이나 아니면 수입물품 관련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통계 관

런되는 사항이니까 통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관세청 소관 통계입니다, 관세청 소관.

○**류성걸 위원** 관세청 소관 통계인데 국가 통계의 총괄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됐느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가 통계 승인 작업은 지금 관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청 또 이쪽의 수입물품에 관련된 사항은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계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부대의견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관세국장이 보완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김재신** 지금 21년 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통계를 공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통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승인 여부는 그렇게 잘 확인하시고.

여기 지금 좀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그냥 저도 확인만 하려고요.

‘관세청은 관세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해 놓으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저희가 주 128번에 사례를 적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것은 통계자료를 작성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유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아까 통계청하고 협의하고 이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2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4페이지입니다.

위임·위탁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의 여러 규정에 혼재되어 있는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을 모아 제329조제5항에

서 규율하려는 내용과 함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예비심사 제도가 상향입법되는 것에 상응하여 AEO 예비심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조문 정비 사항이라서 큰 내용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겠습니다.

2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세계관세기구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HS 2022)를 반영하여 무역량의 증감 및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49조 및 제50조에서는 별표에서 기본세율을 정하고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는 관세율표상의 기본 관세율은 협정세율 등 다른 세율에 후순위로 적용되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보충적 세율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계관세기구의 HS협약에 따라 WCO 가입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해 협약에서 규정한 공통의 품목분류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HS 2022 시행에 맞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려는 내용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수정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세계관세기구에서 HS 코드를 5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2022년 새로운 국제관세표 여기에 맞춰서 국내법도 재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의견 주신, 전문위원 제기하신 사항은 저희들

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HS 분류표 전체를 다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도 적시가 돼 있듯이 국내법의 번역오류 또는 코드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WCO에서 HS 2022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원본도 함께하면서 국내법에 오류가 있을 때는 원본이 우선한다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오류가 한번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30쪽 그것 나오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전문위원 한 것 이것은 사실 저희가 나중에 발견한 건데 이 법안 제출한 다음 거라서……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전에 5년 전에 전체를 한번 전부 다, 해석과 동시에 전부 다를 제가 본 적 있어요. 해석의 경우에 콤마를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괄호를 어디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굉장히 방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석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석이 달라지면 완전히 관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번역본보다도 원본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HS 코드는 전부 공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류성걸 위원 실장님, 제가 공개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리고 국제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류성걸 위원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계세요.

어쨌든 잘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관련되는 원본이 우선한다는 것을 넣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려는 시스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여러 FTA 협정에서 규정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과 관련된 조문을 국내법에도 반영하여 무역협정과 국내법 간 조화로운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FTA 상대국과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하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효율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에 따른 보정제도가 신고납부세액의 과부족한 경우 적용하는 것에서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FTA 관세법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 중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과 관련하여 보정제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의 보정 관련된 사항하고 한번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정 관련된 사항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보정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정, 수정 그다음에 경정, 정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할 때 이것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논의하자고요?

○류성걸 위원 예, 나중에 그것하고 볼 때 같이……

○소위원장 김영진 보정 관련한 전차 논의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이것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지만 한 번 더 봐 달라는 내용이니깐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8페이지입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발견 시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및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 더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를 통보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장이 오류를 발견·통보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대상자를 추가하여 가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 증진·보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납세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오류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압류재산에 가상자산 추가 및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 마련 관련입니다.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압류재산의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은 가상자산을 동산·유가증권과 함께 ‘동산 등’으로 규정하여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가상자산을 ‘그 밖의 재산권’에 포함시켜 이전의 방식으로 압류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그 비교표가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고액채납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 중에 있으나 채권의 특성상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선 현장에서 압류,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가상자산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고액채납자 등에 대한 압류재산 그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조문이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진 의원안은 지금 동산으로 봐서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저희들은 성질상 이게 점유가 안 되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공매 외에 시장 매각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원래 입법취지는 국세청이 올해 초에 고액채납자의 가상자산도 압류를 했다는 것을 접하고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측과 우리가 같은 것이고, 다만 학계에서도 이게 견해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격을 구별할 것이나. 그랬는데 저희는 동산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부 측은 동산보다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고용진 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본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지금 정부 측 입장인 거지요, 성격을?

○**전문위원 정명호** 예.

○**고용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정부, 고용진 의원 발의안.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이것 지금 특금법도 아직 과세유예나 이런 것이 진행 중이고 가상자산의 성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도 안 돼 있고 가상자산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입법해도 징수가 불가능한 법을 입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정되고 구체적이고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 먹은 시점에서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

에 실제로 이것을 압류할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것은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채납한 게 아니고……

○**유경준 위원** 아니, 세금 말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파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지금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상자산을 세금미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파악을 한다 해도 그것을 압류할 방법이나 이런 것도 불투명한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액채납자들이 재산을 가상자산을 사서 그걸로 숨겨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납에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지금 국세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채납 징수를 원활하게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유경준 위원** 규정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굳이 입법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실장님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 부분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가상자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안 냈을 때 이것을 지금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이미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압류를 했는데 가격이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안 내서 압류를 했는데 가상자산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 했었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금 안 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압류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필요해서 법률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과세하는 것도 내년부터 하느냐 1년 유예하느냐 등등등 이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과세 이런 것도 검토를 다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게 총액도, 시총 그것도 크고. 그래서 압류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고.

○**유경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실제로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작년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437억 원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유경준 위원** 가상자산을 압류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시켜 가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매각은 아니고, 지금 매각 규정은 없고 이것을 채권 압류를 해놓으면 가상자산 소유자가 이것을 거래소에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돈으로 뱉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실적 있다 이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넣어야 되는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사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안 준다 그랬을 때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걸로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이걸로 바꿔서 은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동산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동산의 성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합

니다. 그런데 지금 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이나 아니면 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으로 볼 수 없느냐 중에서 동산은 점유의 개념상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것 규정과 개념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타 재산권이나 그다음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 입법한다면 동산보다는 정부안처럼 이렇게 입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안에도 제가 보면 이전하는 방법을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걸로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점유를…… 압류에 원래 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현행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지배력을 이전하는 권한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안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압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다가 뭘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요구한다 이걸로 압류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하고—물론 기본적으로 법률을 할 때 했겠지만—지금 내가 얘기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압류처리의 효과, 점유를 강제로 이전하는 정도의 효과가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21년 3월에 국세청이 고액채납자에 대해서 36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압류 근거가 뭐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채권 압류 규정으로 한 겁니다.

○**김수흥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채권 압류식으로 하면 지금 개정안처럼 안 들어가도 현행대로 계속 압류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채권 압류라는 게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국세청이 압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류가 되면 이 사람은 이 채권을 자기가 꺼낼 수도 없고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으로 갚거든요, 국세를, 국세 체납분을. 그런 것이고요.

○**김수흥 위원**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는 몰수의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몰수하고 압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몰수는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고 압류는 처분하지 못하게 딱 막아두는 것이지요.

○**김수흥 위원**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가상자산도 압류의 대상에 넣는 게 정부 입장에서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대법원에서 이 자산의 성격을 무형자산으로, 아까 동산설도 있고 무형자산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봤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도 무형자산으로 봐서 기타 재산권 항에다 넣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수흥 위원** 저는 박형수 위원님 지적도 합리적인데 지금 정부안 내용도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제 말은 아마 여기서 세제실장님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규정을 왜 만드냐면 지금처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의 규정은 채권 압류할 때의 그 규정대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이전하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전하는 것을 채권 양도를 하면 거기 통지나 승낙을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규정에 바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처럼 공매 처분하려면 직접 점유를,

그러니까 동산 같으면 점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제처하고 심도 깊게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할 때 이전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결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기재부에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세분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세 분 다 전부 이전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박형수 위원** 이전 방식은 맞아요. 이전밖에 지금 안 돼. 그런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전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법률상 효과가 없어,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전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다음에 그것을 불응할 때는 주거 등 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지금 뭘 의미가 있어? 주거 수색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로 처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주거 수색을 하는 게 무슨 대안이 돼요? 그 자체를,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해 가지고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공매 처분하는 것은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 공매 처분의 전 단계가, 이전이 돼야지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법률 자체가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고용진 위원** 실장님, 지금 박형수 위원님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더 강하게 강제하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렇게 요구해야 한대로 했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처하고 논의해서 수정하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받아들이서 가지고 하시면 돼요.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압류를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몰수 재산에 이미 포함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을 논의해서 가지고 다음번에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 길게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 어휘를,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강하게 문구 정리를 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시고 상의하셔서 정리해서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강하게가 아니고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입니다,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입니다.

개정안은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중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의 3개월에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국세 확정 전 압류 후 해제 사유인 3개월의 기간에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세무조사 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개정안은 압류 후 3개월 내의 기간에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의 해제 사유 중 압류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압류 가능 기간인 3개월 산정할 때 제외함으로써 고의적인 국세징수 방해행위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문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국세부과 제척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부과 제척기간이요?

○류성걸 위원 예, 부과 제척기간하고 관계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압류와 관련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게 표현상 뜻은, 말은 조금, 개정안이 ‘중지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가 통상적으로 법에서 쓰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 의미는 이게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기존에 법문에 안 쓰던 거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중지 기간은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이것은 빼고 계산한다 이러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의견……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보통 기간 관련해서 ‘제외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사례하고 별개로 더 명확하게 하자면 현재 원안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도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헌법이나 아니면 법률 규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빼고’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일영 위원 이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제처라든지 다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명확한 것 같아요,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정부 개정안으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확정 전 압류 후 국세 확정 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 국세의 징수간주 재산에 가산자산을 추가하자는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확정 전 압류(보전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

수하려는 국세를 확정된 경우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나 납부기한 내 추심이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개정안은 해당 압류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거래소를 통한 즉시 매각이 가능하여 현행법의 예금 또는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국세 확정된 후 즉시 징수가 가능하고, 납세자가 신청을 할 경우 기 압류된 가상자산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조세채권과 국세 보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국세로 징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확정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자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국세의 확정적인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수용 곤란하다 그랬나?

○소위원장 김영진 수용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수용 곤란입니다.

○고용진 위원 어떤 면에서 곤란하다는 거지요? 검토의견하고 다르다는 얘기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납득이 되게 다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기본적으로 국세로 잡는 것은 아까 압류하는 것과 별도로 확실하게 이제는 국세로 갈음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세는 확실하게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그래서 가치 변동성이 없이 진짜로 국세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개념이 돼서, 가상자산이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국세 얼마 이것을 해서 ‘갈음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압류는

계속해야지요, 압류는 하고. 현금으로 받는 게, 가능하면 현금으로 해서 확실하게 받는 게 국세 측면에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일 선상의 개념으로 넣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그다음에 가상자산 중에 환금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는, 소위 말하는 무슨 잡코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걸 갖고 있다고 저걸 현금화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세채권 확보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압류·몰수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위 납세자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재산의 성격이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산의 가치가 없다면 결국은 국세 징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있고 없고 문제는 가상자산 성격이 있지만……

○박형수 위원 감해 주지는 말자, 국세를 그대로 두고 잡아 놓자,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고용진 위원 정부 측 의견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여서요 이걸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걸 추후에……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이게 지금 금전 당연한 거고 예금도 사실은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건데, 유가증권은 어떻습니까? 유가증권도 현금화했을 때에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의 유가증권이라고 했을 때 100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겁니까, 차관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주식이나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잘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10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데 100원으로 해서, 지금

이게 간주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유가증권도 120원이나 150원에 해당이 되는 것 할 것 같으면 가상자산도 등락 폭의 그것에 따라서 가상자산 100원을 하는 게 아니라 150원 하고 남는 것은 나중에 환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그런 취지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유가증권도 그런 취지의 이유로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조세총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압류를 해 놓고 나서 그 압류한 재산 이게 얼마짜리더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그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를 하자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금전, 확실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추심 가능한 예금입니다. 추심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추심이라는 건 일종의 수표나 어음에서 대금을 찾는 걸 추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도 결국에는 어음이나 수표나 채권이나 상품권, 선하증권 이런 식으로 금액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추심이 가능한 자산만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이라든지 부동산은 나중에 환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은 납부한 재산은 한도라는 용어상으로 보면 그 자산들은 공매 절차나 다음에 환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추심이 가능한 유가증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류성걸 위원 어쨌든 고용진 위원도 추후에 논의하자고 보류했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추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의 공매 참여 시 공매보증금액 납부 가능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자는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압류재산의 공매 시 공매보증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매보증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다 많은 공매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납부 수단으로 인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과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공매보증금액 납부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이것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공매보증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금전, 국공채 이렇게 확정적인 것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거냐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도 같은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전차 회의와 계속 연관되는 문제라서 추후에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도 똑같은…… 특히 공매보증금은 더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것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상대방에 채납자의 소재 또는 거주 사실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예비절차로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상습 채납자가 제삼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채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조항의 미비로 질문·

검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채납자의 소재·거주 정보는 채납자의 은닉채산을 찾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고액·상습자에 대한 채납관리를 강화하고 채납국세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질문·검사의 상대방은 채납자와 거래, 채권·채무, 주주·사원 등 일정한 금전적·경제적 관계에 있는 자인 반면에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자는 채납자의 소재·거주를 관리하는 자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채납자의 거주 정보는 채납자 재산을 찾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상습 채납자가 친족 등 제삼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질문·검사권의 일부 규정을 약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행정부가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공동주택 관리인 등’, ‘등’이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킬 것 같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디든 가 가지고 ‘그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행정 편의적인 또 인권·개인정보 관련해서 너무나 소홀한 그런 개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채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현행을 보면 질문·검사의 상대방을 보면 채납자, 채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질문·검사권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인들은 채권·채무 관계가 채납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텐데 이분들에게 굳이 꼭 이렇게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잉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보니까 질문·검사권을 행사했을 때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처벌하는 징벌 수단이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배준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관리소에 가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 취지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개인정보를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을 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는 좋을 텐데 그만큼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기본법 88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을 행할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관리인도 채권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소위원장 김영진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이 그 규정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법률가시니까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

니다. 수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갔다, 그 아파트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 대답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질문·검사권 이런 것 없어요, 수사기관에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거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아예 제출 안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영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올 때는.

그런데 그것을 이런 규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우리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2페이지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및 위임근거 마련입니다.

대비표에서 보시듯이 법률로 상향하는 조문이 있고요,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법률상 근거를 명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훈령·고시·예규·통첩·지시 포함해서 이렇게 법규 사항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만 해당이 될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하고 또 세제실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되는 목록 제출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기한 후 신고기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내용을 명확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9페이지입니다.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 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9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문입니다. 정상원가분담액이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다국적기업이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세제 적용 시 과세 당국이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정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정상원가분담액 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OECD 가이드라인

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구 수정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이의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인데요.

먼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저세율국의 세부담률 판단기준을 종전 15% 이하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27조는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저세율국 소재의 특정외국법인이 수동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정기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명목세율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법인세율이 변동되더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배당간주소득이 증가하여 추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한시적으로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해외 조세회피처에 이자 배당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의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73쪽 해외 주요국 세부담률 판정기준 이렇게 했는데 OECD 국가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적정한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지금 규정하는 방식이 직접세율 규정하는 게 있고 법인세율의 몇 %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 국내세법 적용했을 때

세금의 몇 %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고정세율 방식으로 하는 게 OECD 국가 중 9개국이고 그다음 모국 법인세율 최고세율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5개, 그다음에 국내 납부세액 기준으로 하는 데가 14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보니까 통상 법인세 최고세율의 60~90%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70% 정도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이고 지방세 포함하면 27.5%인데 거기에 70% 하면 17.5% 해서 19.25%대가 돼요. 뒤에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높아요, 그렇지요?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지금 현재가 15%인데 그것보다 조금 올리는 거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18.9%, 스페인 18.75%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작은 나라들이, 해외 진출이 별로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12 13 1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70%로 하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9.25%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나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택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택의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신택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택을 포함함으로써 신택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신택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이 도입된 점,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이와 유사한 법인과세 신택이 포함되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OECD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서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다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7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른 자구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178페이지입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외에도 현행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의 처리합니다.

5항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제도 정비 등 관련 사항, 가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이라는 각기 다른 사항이 같은 항에 혼재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 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투자운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납세자의 순응기간을 감안하여 과태료 적용기한을 1년 유예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역외세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해외부동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보유했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보유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뒤에 182쪽의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보유가 물론 관련되는 거래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경우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그 신고서를 아주 간편하게 해 갖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세법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83페이지 청년세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부가세이자 목적세 성격을 가진 청년세를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내

용입니다.

동 제정안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청년세 세입으로 재원을 추가 마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주된 사업이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새로운 세목 신설은 추가 조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계속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뒤에 나온 것처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4권 참조하시면 됩니다.

○류성걸 위원 조특법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 조특법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수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4권 5권 6권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특법 내용 중에서도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은 일몰을 연장하는 것 또 관련되는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것, 세 번째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세 관련해서 혜택을 좀 더 주는 것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작성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특히 요약자료가 돼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요약자료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요약자료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한번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준비에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류성걸 간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지금 조특법 관련되는 자료가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 보시던 소위 자료가 세 권이 있고요. 권별로 요약본이 있는데 그 차이는 첫 번째는 순수 일몰연장만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일몰 플러스 약간의 제도 변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도 변경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일몰 중에 정부안으로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일영 위원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령 있게……

○류성걸 위원 제가 그래서 빨리 하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면 다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1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목하고요, 개정안 내용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50%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현행 제도 2년 적용기한 연장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의견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5년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기존 제도 2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공모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공모부동산펀드 및 공모리츠에 대한 9% 분리과세를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현행 분리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개정안 5건은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의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2년 연장이고요, 의원님 네 분 안은 3년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정부는 기존 제도를 변경 없이 연장할 때는 지금 원칙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장 관련된 사항이 쭉 보면 1년 연장한 경우도 있고 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물론 의원님들 안에 의하면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셔도 좋고 지금 어떤 형태든지 하여튼 기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

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정부안을 낼 때 단순 일몰 연장되는 것은 2년, 그다음에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제도 내용이 바뀌는 것은 3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올해 법을 바꾸면 내년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 세금은 그다음 해에 들어오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되는 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은 3년 그다음에 단순 일몰 연장은 조세감면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2년마다 이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2년, 그런 원칙하에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원칙하에서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묻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제도가 조금 더 보완이 됐다든지 아니면 개선이 됐다 했을 때 3년이라면 그다음 번부터는 또 2년이 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단순 일몰 연장한다면……

○류성걸 위원 단순 일몰되면?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있고 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경우는 언제 할까 또는 이번에는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3번은 다 동의하셨습니다.

4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면 위원장님, 정부안으로……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으로 합의한 겁니다. 단순이니까 2년이요.

○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안하고 의원님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단순 일몰 연장으로 연장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2년으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정부안 2년, 추경호 의원·김수홍 의원안 3년 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단순 연장으로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 원칙에 따라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단순 연장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6항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단순 연장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2년으로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8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내국인이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수령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였을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년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10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키고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단순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2년으로 동의합니다.

11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FTA 체결로 인하여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2년 원칙 동의 처리합니다.

12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도모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한계기업이 금융채무 상환, 채무면제 등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할 때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2년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항이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52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원칙대로 2년 연장 처리합니다.

14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62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년 연장으로 동의 처리합니다.

15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동일하게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 동의하시면 2년 연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6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122조의4에 따른 금·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수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금·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에 따른 매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 스크랩 등 매입자 특례의 도입과 함께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2년으로 처리합니다.

17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 등에 대해 내용연수의 범위를 기준연수의 50% 또는 75%의 범위에서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

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은 아니고요, 추경호 의원안이고요. 적용 기한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가속상각 특례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일몰을 종료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단순히 일몰 종료 또는 일몰 연장 이게 아니고 이 제도의 효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좀 더…… 종료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일몰이 다가오면 원칙 종료이고 또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야기하는데 종료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이렇게 2년씩 장기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가속상각을 아주 한정적인 기간 동안 해 줘서……

○류성걸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이게 2019년 1월 1일에서부터 19년 말까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한 번 했고, 거기 잠깐 끊어졌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이렇게 세 차례 쪼가리 쪼가리 연장돼 온 상태입니다.

이게 투자를 앞당기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고 투자 쪽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것이 장기화가 돼 버리면 프론트 로딩의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몰 적용……

○류성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 안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본인 오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7항은 우리 회의 중에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1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19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로 처리하겠습니다.
20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개정안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 현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와 학생 등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적용기한 2년 연장이고요, 김수홍 의원안·추경호 의원안은 3년, 홍문표 의원안은 5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적용기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2년 연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1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더불어 의원님들 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1항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 동의 처리합니다.

22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다수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23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버스운송회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 버스를 구입할 때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 동의 처리합니다.

24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고 농어촌의 소득 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2년 연장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년 연장으로 동의 처리합니다.

25항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 동의 처리합니다.

26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폐자원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27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보급하려는 내용인데요.

특이사항이 적용기한을 보시면 정부안은 1년이 고 의원님 안은 2024년 또는 2025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1년 연장인데요. 사유는 1년 지나고 나면 전기차나 수소차도 그때 일몰을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저공해차가 어떻게 갈지 종합적으로 그때 한꺼번에 보는 것이 필요해서요. 이것은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지요.

○김수홍 위원 지난번에 했어서 그것으로 맞춘다고 하니까 정부안 수용입니다.

○류성걸 위원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2050 탄소제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막 가고 수소차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그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방향이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수소차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것을 다음번에는 종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보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상당히 순서도 빠르고 오전에 거의, 점심식사 전에 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이디어를 한 개 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일몰을 해서 우리 정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몰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일몰을 종료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사전 예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다음에 하면 그래서 2년 되고 1년 되고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이 특례는 종료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각 조세특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제실에서 전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지금 2년 하는 것은 또 하면 또 2년 되고 또 2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2년 뒤에는 1년으로 줄고 1년 뒤에는 종료한다는 이런 형태의 고지가 필요하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정부 측 설명과 위원님들 말씀으로 2023년부터 적용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2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대로 2년 연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9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13건의 개정안은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대로 2년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30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세 조항 모두 다 2년 연장으로

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3호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대로 2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따라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3년 연장인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3년 연장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것 제가 좀……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복귀 기한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한 다음에 1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이것을 2년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세하고 소득세 감면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부 다 저희는……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3년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님, 김수홍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 설명은 사실은 앞에 있던 것 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미 다 예측 가능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2년으로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같이 봐 주시지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이것이 패키지인데 거기서는 실제적인 내용이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패키지에서는 내용이 변경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법인세 부분에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법인세랑 소득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관세·소득세·법인세 다 같이 있는데 하나는 3년 되고 하나는 2년 되고 막 이러면 이것이 같은 제도가 뭐가 정합성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관련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류성걸 위원 그런데 뭐가 2년이고 뭐가 3년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법인세 그것은 저희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턴기업이 돌아와서……

○류성걸 위원 그것은 하고자 하는 거고.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위원님 이것이 5권에 나오거든요. 5권에 나오니까 그때 그러면 같이……

○류성걸 위원 그때 같이 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나항 관련한 사항은 5권 얘기할 때 같이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아까 제가 사실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발언을 못 했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아까 31항에 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부총리께 질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특정 국가 그리고 특

정 제품에 혜택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제품을 자꾸 계속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생산 R&D라든지 이런 것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통과는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연장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위원님 항상 그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국내 생산 기반 확충, 경쟁력 확보에 계속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너무 안 되는 불가피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년 지정을 하면서 그 품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은 예전에 태양광이 많이 왔다면, 태양광은 작년에 3개였다면 내년에 1개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풍력 같은 것이 이제 좀 많이 추가되고 또 그 와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생산이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또 새로운 것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상 품목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다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자꾸 수정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왼쪽에 보면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대해서는’이 더 맞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3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

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단순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안대로 2년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정부안에 지금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부에서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령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시행령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예, 하위법령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번잡하지 않은 것들은 법률로 올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32항은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마지막에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것이 약간 누락된 부분인데, 재기중소기업인 관련되는 조항인데……

○류성걸 위원 몇 쪽이에요?

○전문위원 정명호 37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참고 표시 있는 부분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5항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를 창업으로 세액감면 특례를 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몰인데 지금 저희가 논의한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확인해서 조항 찾아서 다음 회의 시작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김수홍 위원 좋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5권부터 요약본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제도 설명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을 의미하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설립·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그림을 보시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이 있고요, 다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있고 매도일이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현행법 제16조의2는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3000만 원 비과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조의3은 납부특례인데 벤처기업 임직원이 그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고요.

16조의4는 과세특례인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대신에 주식양도 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같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단계에서 근로소득을 종합과세하고요, 주식매도 단계에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

세하는데, 특례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단계에서 연 3000만 원 비과세되고요 세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주식매도 단계에서는 행사 단계에서의 과세 대신에 처분단계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 하기 전에 그 그림 관련해서, 여기에 행사이익이 있으려면 행사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니까 부여일 시가입니다.

○류성걸 위원 부여일 시가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행사이익은 행사일 시가고요, 그 차이가 행사이익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행사가격이 부여일 시가보다 낮을 때가 있어서……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것 새로운 제도입니다.

○류성걸 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행사가격은 부여일의 시가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류성걸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 정명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행사한 이익까지를 포함하자는 거고요. 김수홍 의원안과 정부안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인데요. 정부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이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곤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안, 김수홍 의원님 안의 경우에……

김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한번 하시지요.

○**김수홍 위원** 현재는 비과세특례가 벤처기업의 임직원만 적용됩니다, 3000만 원까지 행사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자회사는 그동안 빠져 왔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는 의미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이 인수한 자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동안 자회사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모기업, 즉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서 이것을 자회사 임직원까지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정부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이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벤처기업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는 건데, 스톡옵션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한데 그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A가 줄 수 있는 스톡옵션의 양·금액,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비상장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입니다.

○**류성걸 위원** 50% 이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리고 그 대상은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그다음 기타 교수 등 전문인력, 대학·연구기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벤특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게 결국 합병이라고 하면 벤처기업이 돼 버리는 건데 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식의 50% 이내 등등 다른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김수홍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훈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벤처가 되기 전에 준 주식 스톡옵션에 대해서 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 존경하는 김수홍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수홍 의원안, 정부안으로 합의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페이지입니다.

비과세특례의 한도액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현재는 비과세 한도액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한도액 상향이고요, 적용기한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액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현재 3000만 원인데 최근에 제2 벤처붐이라든지 벤처 지원 이런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한도액 5000만 원 상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 예, 특별히 의견 없고요.

5000만 원 한도고,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 입장으로 2024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정부안대로 2024년 말하고 5000만 원 한도 상향 좋다고 봅니다.

○**류성걸 위원** 지난 96년도에 행사가액 기준 5000만 원이 됐다가, 2000년에 3000만 원 됐다가 또 폐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폐지했다가, 제로 됐다가 2000만 원 됐다가 3000만 원 됐다가 5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이런데, 세법에 관련된 사항,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물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또는 최저임금 이렇게 한다면 선택적으로 어떤 제도 또는 관련되는 비과세특례에 적용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벤처 쪽에 과세특례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의식에서 됐냐 하면 젊은 인재들이 벤처 쪽으로 안 가고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배’에만 자꾸 가기 때문에 인재가 이쪽으로 좀 흘러올 수 있게 유인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많이 주기는 벤처기업이 자금상 어렵기 때문에 스톡옵션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그 정책적인 취지가 벤처의 활성화 또 이를 통한 고용창출,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정책적인 목표이지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올려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저도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진짜 우수한 인력을 벤처기업의 직원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스톡옵션을 지급한, 그러니까 스톡옵션의 혜택을 받은 분이 어떤 분들이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통계도 없고 한테 스톡옵션에 임원이 많은 건지 직원이 많은 건지…… 제가 생각하기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원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임직원입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임직원인데, 실제로 스톡옵션의 혜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을 그간 분석한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참고로 19년에 스톡옵션을 받은 인원 중의 약한 75%가량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입니다, 한 50% 이상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자고.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전체 연봉이라는 게,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고 전체 중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지 7000만 원이라고 해 버리면, 벤처기업 자체가 이삼천만 원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한테……

7000만 원이라면 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분포가 상위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근로자 전체에서요?

○**류성걸 위원** 아니, 벤처 전체에서. 지금 우리는 벤처 따지고 있으니까.

벤처 전체에서 7000만 원 정도 된다면, 전체 근로자 숫자에서 따지면 7000만 원은 얼마 안 된다고 해 갖고 하위 직급이나 또는 직원이라고 이

야기할 수 있지만 벤처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임원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7000만 원 정도 되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류성걸 위원** 전부 임원일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5000만 원 이하 자도 55%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게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인력을 직원으로 뽑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또 행사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특례를 준다고 한다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아마 그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임원들에게만 집중돼 있다면 사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결국 무너집니다. 소수만 그렇게 해서 먹을 것 같으면 스톡옵션이라든지 유치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못 가고요. 대부분 보면, 따져 봐야겠는데……

○**류성걸 위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유인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소수 임원들만을 위한 그런 형태의 특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저거하는데 알고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해당이 돼 갖고 진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국장님, 아까 7000만 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벤처업계에서 7000만 원 정도 되면 상위 몇 % 정도 될까요, 7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7000만 원 이상이 한 13~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간부 또는 임원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아니, 그런데 3000만 원 이하 자 중에 받은 사람들이 30%나 있고요. 물론 임원도 숫자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가 받은 사람이 30%고요, 4000만 원 이하까지 받은 사람이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스

톡옵션이 충분히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걸로 통계상으로는 보입니다.

○류성걸 위원 17년에 2000만 원에서 20년에 3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거기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사실 우수 인력들이, 인재들이 많이 갔더라.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하면 그런 효과가 배가가 돼서 더 많은 우수 인력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스톡옵션 부여 실적이 16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17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중기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최근에 벤처기업의 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실적도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톡옵션 하나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나름대로는 특히 벤처업계에서나 중기부에서 지금 스톡옵션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나 저희들의 세제 지원 확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취지에 맞게끔 한도액 5000만 원, 기한은 3년 이렇게 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제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인데요.

1페이지의 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행사일 시가하고 부여일 시가 이게 행사이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납부특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례인데요. 적용기한 연장 관련해서 정부안하고 의원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현행 5년간 분할 납부 이것을 연장하는 건데요, 이 자체는 단순 연장이지만 앞의 제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같이 가야 돼서 저희들은 3년 연장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류성걸 위원 그것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했던 것하고 또 아까 벤처기업이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상에 대해서

는 자회사 임직원이라는 것하고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년으로 한다는 논리는 별로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이게 세 개가 세트입니다.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과세특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받을 때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행사 때 안 내고 양도할 때 몰아 갖고 과세특례 받고 이 세 개가 다 세트로 되어 있어 갖고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입니다.

현행법 제16조의4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하단에 보시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일 것,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한 것이 아닐 것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행사 시점에서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향후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주식의 처분 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인데요.

정부안하고 김수홍 의원안의 공통점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고, 김수홍 의원안은 단서에서 ‘개정안 시행 전에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개정안 시행 후 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차이가 있어서, 아마 두 가지 관점 모두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회사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이것을 약간 소급해서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부분은 그냥 정부안대로 미래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제가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잘 하시겠지만 벤처기업에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회사의 우수한 인력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모회사가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정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세제실장님 잘 하시겠지만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걸 보완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이에요.

그동안 이런 입법 사례가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러면 경정하는 분까지 되면 과거 5년까지 소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신고분, 올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에요. 명백하게 소급입법이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2021년 1월 1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형태의 소급입법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정안 시행 전에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개정안 시행 후 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부분은 거의 소급입법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감안해서 개정안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전부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세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김수홍 의원님 안에 있는 것은 최대 5년까지 소급이 되거든요, 경정하는 분까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만 한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납세의무가 확정됐는데 그걸 소급하는 것은 좀 무리지만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류성걸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확정되기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확정하게 되면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한 개의 선례가 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그러면 최종 세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해 준다, 물론 다 해 준다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자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왜 그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굉장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진정소급이 아니고 부진정소급 정도는 통상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좀 더 논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가·나·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 라……

○류성걸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확정되기 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모든 관련되는 사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진정소급이나 부진정소급이냐를 다 봐야 되겠지요.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진정·진정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 일이고, 그것은 근본적인 이야기고.

진정소급입법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세기본법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를 인용해 갖고 다른 것도 전부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건건이 전부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이 잠깐만……

○김수홍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김수홍 위원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지적도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종전에 입법할 때 과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자회사의 임직원한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세특례는 자회사의 임직원은 제외시켜서…… 입법적으로도 그 내용을 보면 자회사의 임직원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혼란을 일으킨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정부가 낸 안으로 하면 과세의 질서나 소급입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입법적 불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데 참고되도록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면, 당연히 정부도 차관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진정·부진정을 떠나 가지고 소급입법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가 내년 행사 부분부터 하는 게 일단은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데 지금 김수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본다면, 두 가지 소급을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5000만 원 비과세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소급의 정도를 5년 전까지 무한정 늘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5년 전까지 무한정 늘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벤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다면 비과세 부분은 하지 말고 과세이연의 경우에는 세목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또 법인의 경우 비용이 인정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떤 혜택의 방식의 변경이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행사한 부분은 아직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내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만 소급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겠단—그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저희들이 한다면 그 정도 부분이 맥시мум 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이건 계속 논의하시지요. 이게 왜냐하면 한 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 수만 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그러면 가·나·다 세 개가 다 연관된 안 아닙니까? 별도로 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별개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과세특례 내용 보완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고 하면 앞에 6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세 번째가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한 것이 아닐 것’ 현재 불가능한데 이런 낮은 가격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제도를 인정을 하면, 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현행법상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적격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사이익, 양도이익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거거든요. 낮은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그림으로 보면 ㉠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시가 이하 발행 이 부분도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은 벤처기업 여러 가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수홍 의원안에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논의했던 전차와…… 의견 있으세요?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 ‘행사가격이 지금 현재 뭐냐?’ 이렇게 제가 여쭙봤어요. 그러니까 ‘부여일 현재 시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취득가격이 부여일 현재 시가거든요. 그러면 행사이익은 결국은 9쪽 오른쪽의 행사이익하고 같아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래서 현행법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시가이하발행이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9쪽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입법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현행법상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부여일 현재의 시가를 행사 가격으로 하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9쪽 오른쪽 그림도 최종적인 행사이익은 결국은 ㉠’ - ㉡가 돼서 최종적으로 행사이익은 왼쪽에 있는 행사이익(㉠)하고 같아지는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행사가격이 부여일 시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통상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어쨌든 오늘이 부여일이라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다

음에 그 올라간 부분만큼을 너한테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부여해 줄게’라고 해서 부여일 판정을 할 때 에이스들 몇 명,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오늘의 시가가 너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업들이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그것을 줄 때마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할 때는 ‘너는 좀 더 세계해 줄게’ 아니면 최근에는 ‘우리 주가가 금방 올라가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가보다 한 10% 올라가는 것은 네가 기여한 게 아니야’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일 시가보다 높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부여일 시가보다 낮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여일 시가보다 낮게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발행의 행사 차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벤처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여일 시가보다 높게 주는 것은 원래부터 열려 있었어요. 앞으로 부여일 시가보다 낮게 주는 것도 허용을 하겠다, 허용을 하는 대신에 그 차액만큼은 네가 근로의 제공 없이 그냥 그 기업으로부터 일단은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줄 수가 없고 근로소득세로 일단 내고 시작을 해라라는 게 저희들 이번 세법 개정을 낸 내용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8쪽하고 9쪽 관련된 사항은 정부안이 아니고 김수홍 의원안이잖아요. 그러면 김수홍 의원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부여일 시가보다 높게 줄 수도 있고 낮게 줄 수도 있고,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주고 있는데 세제 혜택은 부여일 시가로 준 것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부여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이익이 생겼는데 아까 3000만 원까지 비과세,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 주는데 애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른 행사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를 당하는데 좀 불합리한 점이 거기서 하나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차관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해 줌으로 해 갖고 지금 제2 벤처붐 때 벤처 쪽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갈

수 있게 한시적으로 더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아니더라도 그 관련되는 것은 지금 일반 인처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적격매수선택권은 아니면서 나중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양도 소득세로 해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 말씀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제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또 그것은 과세가 되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0페이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적용기한 연장하는데 앞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해서 새롭게 변경되면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이것은 전차 부수되는 법안이라 다음에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의 성과보상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향 등인데요.

소득세 감면을 상향이 있고 적용기한 연장이 있는데 개정안 3건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정부안의 경우에는 청년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에서 50%로 상향하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 제도가 청년들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세부담을 조금 더 완화해 주자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90%, 중견기업은 50% 이렇게까지 감면율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이 있어서 연장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게 공제금 수령 시에 가입자가 됐던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또 기업의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데 특례를 보면 최대한 50% 감면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개인이 내는 건 이미 세금 낸 돈을 내는 거니까 그것은 비과세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는 돈은 이것은 추가적인 급여인데 급여성이지만 50% 정도는 비과세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류성걸 위원 정부는 그냥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정부는 그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데 정부가 주는 것은 어쨌든 근로의 대가로서 고용주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안 봐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여 공공부조 형태로 가는 것 중에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 지원 중에서 혹시 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보통 복지지출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과세되는 게 혹시 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정부 보조금은 과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유경준 위원 내일채움공제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은 5년으로 돼 있는데 내 기억에 시작할 때 2년, 3년으로 해서 5년으로 한 게 지금 실행이 된 적 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것은 처음에 신

규자를 상대로 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랬었고요. 이것은 재직자 중에……

○유경준 위원 재직자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재직자한테 하는 게 약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은 고용부가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중기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재직자도 지금 시행한 게 5년 정도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지금 성과가 나와 있어 가지고 가입자 이직률하고 미가입자 이직률 차이가 5%p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5년 짜리의 성과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이제 시행한 지가 5년이 될랑말랑할 텐데……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2014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유경준 위원 2014년부터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핵심인력은 2014년이고 청년 재직자는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유경준 위원 지금 이것은 재직자 핵심인력?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동의하시기 때문에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유경준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청년 및 핵심인력으로 나와 있잖아요, 청년 및 핵심인력으로. 그러면 이게 성과평가가 두 개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핵심인력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청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프로그램이 핵심인력내일채움공제가 있고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고요.

○유경준 위원 청년에 대한 건 언제 시행됐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청년은 18년도.

○유경준 위원 18년이니까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성과평가한 결과가 5%p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인력이고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이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여기 설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

분은 확인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5년을 자산 형성을 해야 끝났을 때 자기가 목돈을 가져가는 거라서요. 그게 계속 도래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쌓아 났고요.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핵심인력은 이렇게 성과평가가 있어서 되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한 것 보면 2년하고 3년짜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2년 하고 3년 하고 난 뒤에 2년, 3년째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2년 3개월이 지나든 2년 4개월이 지나든 또는 3년 1개월이 지나든 하면 이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에 딱 그만큼만 해당되면, 소위 말하면 그것만 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인력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난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 중이고 2018년부터 했으니까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법안이 올라온 것은 둘 다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둘 다 올라와 있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핵심인력은 기존 제도가 연장되는 거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 감면율을 50이 아니라 90%로 40%p를 더 높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게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인데 기한 도래가 안 돼서 성과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과평가한 것은 핵심인력이고, 기한 도래한 것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한쪽만 분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유경준 위원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합시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그에 근거해서 합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 3건은 공통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고요.

소득요건과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안은 총급여액 3500만 원 이하이고 정부안은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기존 제도에서 가입 대상의 급여액 한도를 약간 상향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큰 변동이 없어서 2년 연장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이것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안에 보면 총급여액하고 종합소득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죽 한번 써 봤더니 이것은 비례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 3000만 원이면 여기 지금 현행은 종합소득 2000만 원, 또 옆에 정부안은 그게 비례를 하니까 3600 또 2400이 되는데 어떤 것은 보면 3200이고 2500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법에서 급여나 소득 기준으로 어떤 상한을 잘라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라는 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총급여액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실제로 과세를 할 때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따로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비라든지 책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도 뭔가 필요경비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과거에 솔직히 약간 근로자가 지갑이 투명하다는 이유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를 해 주고 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금액을 비중을 맞추다 보면 총급여가 사업소득금액보다는 보통 한 30% 정

도 높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 3600만 원하고 2400만 원 이렇게 계속 균형을 맞춰 가는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에 3600만 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한 몇 % 선을 차지하느냐 그걸 봐서 그러면 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높낮이하고 같은 수준이 어디쯤 되느냐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알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총급여액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전부 다 죽 내가 한번 써 봤어요. 써 봤더니만 비례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들쭉날쭉이에요. 모든 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여기 지금 특례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도 그냥 들쭉날쭉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예컨대 종합소득 관련해서 사업소득 포함해서 하면 2000만 원 되니까 3000만 원 되겠더라. 그러면 근로소득의 경우에, 총급여액 같은 경우에 3500이 되면 한 이천삼백이 되겠더라 이렇게 비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 맞춰 보세요.

특히 복지지출 관련해서 기준 정할 때 보면 중위소득의 50% 또는 중위소득의 80%, 100% 그렇게 하고 또 1분위는 1분위대로 하고 2분위는 2분위대로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그것은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예산실에서 맞춰야 되지만. 세제실에서는 최소한 이 숫자는 비례적으로 한다면 비례적으로 좀 맞춰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류성걸 위원 예,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걸 볼 때 기준점이 무엇인지가 각 조항마다, 아니면 지원방식, 대상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과연 표준점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 관련해서는……

○유경준 위원 관련해서 저도 개념상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총급여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임금 근로자를 의미하고 종합소득 2500만 원으로 하는

건 임금소득자 외의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유경준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종합소득이라 하면 원래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종합소득으로 하면 임금소득자를 포함을 하는 걸로 나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여기서 종합소득은 순수 근로소득자는 빼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3500, 2500 이런 식으로 해 놔서 그렇게 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근로소득이 포함되는데 총급여……

○유경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금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데 양쪽이 동시에 소득이 있는 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소득과……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3500하고 2500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500 플러스알파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데 근로소득이 3500인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전환이 될 때는 3500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로소득공제가 빠지고 천 얼마밖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충돌해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2400을 넘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도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건 내가 지금 국세청하고 확인 중이니까, 나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소위원장 김영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부안입니다. 차꾸 금액을 헛갈리면 안 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총급여액 3000만 원—지금 현행을 이야기할게요—종합소득

2000만 원 하면 미니멈 되는 겁니까?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또는입니다, 또는.

○류성걸 위원 미니멈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또는입니다.

○류성걸 위원 또는으로? 알았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정부안으로 요건, 기간 이렇게 해서 동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근로소득 3500이라도 이게 종합소득으로 환산해 가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포함해도 종합소득 2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저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종합소득이 근로소득 또 여러 가지 임대소득, 기타소득 다 포함해서 위원님이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종합소득이 그것을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동의 처리하지만 정확히 확인해서 다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라고 불리는 현행 특례규정은 소상공인 임차인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정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소상공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소상공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게 소위 착한임대인 지원 이런 건데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 잦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 착한임

대로 지원제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자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것 기간을 6월 30일로 끊어 버리니까 너무 이게 회계연도도 그렇고 보고도, 물론 신고기간이 길지만 지금 회계연도를 기본으로 해서 연장을 하려면 1년을 해서……

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6월 30일 날 끝납니까, 차관님? 아무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너무 짧게 해 버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소급해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줄 거면 저는 1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용혜인 위원 아니, 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검토자료 보시면 임대료 감면된 임차인의 숫자들을 보면 이게 세액공제 특례의 효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하거나 혹은 준폐업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할 때 사실 세액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수년 전부터 상가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를 해 왔었고 작년과 올해는 그 증가 폭이 매우 컸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임차인 지원효과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효과가 더 컸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중손실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안에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020년 기준으로 2367억 원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큰 금액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저는 좀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국감 때 제가 이야기를 또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의 서식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서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없어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아예 법정서류에서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받으려면 확실하게 서식을 만들어 놓고 하든지.

국장님,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

○류성걸 위원 서식 없어요. 서식도 없고……

없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러 서식을 만들지 않은 것은……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서식 자체도 없고 일선 행정관서의, 그러니까 세무관서의 세무서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다 해줘 버려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일단 이게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신고납부든지 고지납부든지 어쨌든 간에 최소한 법에서 명시를 한 서류라면 법정서류가 되니까 거기에 서식을 만들든지. 저는 서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식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이 법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겠지요, 서식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걸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님, 그러면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인하에 관한 합의 사항을 제출할 때 임의 작성도 다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자기들이 원래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정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동시에 내면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의 양식을 정해 주게 되면 혹시나 그 양식에 못 맞췄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 같은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 준

해서 납세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 주시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상가 임대료 인하에 관한 것이 임대인에게만 이익이 가는 그런 것은 상호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 아닙니까, 신고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실제로 그에 준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견해를 수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철회하시지요.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내용 이어서……

○용혜인 위원 어차피 소소위 가서 합의하실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 상황을…… 아까 위원님이 견해를 주셨는데 그 견해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리고 여기 정태호 의원안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올 연말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6월 달 정도 돼서 폐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류성걸 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봤을 때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해 버리면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계속 내는 경우도 있지만 폐업해 버리고 임차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폐업해서 사실은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서는 법률행위니까 계약서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추가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임차료를 안 받음으로 해 갖고 손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했을 때 사실행위로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임차료를 내는 경우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의로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임대료 안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차료를 안 내면서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민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착한임대인제도를 뒀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된다’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어 갖고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한다라고 해 갖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행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죽 진행하고 있어서 상향 입법이고, 근거해서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여야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12월 31일까지요, 6월 30일이 아니요?

○소위원장 김영진 6개월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용혜인 위원님 말씀을 다시 인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사중손실(deadweight loss)에 따라서 안 해 줘도 될 것을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기한을, 지난번 6월 1일부터 해 갖고 1년이면 6월 30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그런데 편의적으로 6월 말까지 돼 있던 것을 그냥 연말 회계연도로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2020년 2월 그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실제로 적용된 게요. 그러면 1년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리고 신고는 올해부터 한 겁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신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은 내년에 신고하고요. 내년 6월까지 한 부분은 그 후년에 신고하고.

○류성걸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한테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6월 말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12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하여튼 연말이 좋을 것 같고요. 착한임대인 그것 해 가지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번인가 연장돼 왔잖아요, 두 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1년인가 6개월 연장돼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하는 시간 필요하고 신고하는 시간 필요하고 또 정산하는 것 필요한데 코로나가 아직 극복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류성걸 위원 전체 세액공제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이천……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코로나가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게 적용된, 그러니까 세액공제해 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소득세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세액공제액은 2367억 원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론 2020년도에는 31일까지 됐고 2021년도에, 올해까지는 12월 31일까지 하니까 그것은 맞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그러면 우리 5월 달에 또 개정해야 돼요. 연말까지 하세요. 그러면 소급입법했다고 우리 또 논의해야 됩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뭐를 또 5월 달에 개정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종료 기간을 6월 30일로 해 버리면 그전에 또 의결해 줘야지요.

○고용진 위원 예측이 되잖아요.

○유경준 위원 코로나가 6월까지 안 끝나겠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안 끝나지요.

○고용진 위원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예측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경준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 인하한 사람한테만 해 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상가임대차계약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6개월로 끊어 버리면 좀 이상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아니고 시작한 1년이 1년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쭉날쭉이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오늘 기재 조세소위원회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임대·임차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연장 관련입니다.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문진석 의원안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10%~12%를 12%~15%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은 현행 있는 제도를 2년 연장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법인이 아니지요, 개인사업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류성걸 위원 그래서 문진석 의원님 안은 근로자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으로 합의 동의 처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8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고요.

김수홍 의원안의 경우 벤처기업 등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추가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김수홍 위원님이 벤처 육성을 위해서 기술우수 중소기업도 포함을 시키자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면 연장은 3년 연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하셨으니까.

○김수홍 위원 저는 발의를 했는데 정부가 수용한다는 건데 이게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김수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금조달이 안 되니까 전략적, 주식이나 이런 것 교환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자는 거니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좀 까다롭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 등’ 해서 등 자가 달렸는데 이 등 자에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류성걸 위원 매출액 대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R&D 비용이……

○류성걸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류성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면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에다가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우수기업

하면 또 등등등등 해 갖고 넓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벤처기업 등 해서, ‘등’에는 벤처기업 플러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이렇게 못을 박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인 중소기업도 법에 있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러면 연구·인력개발비가 뭐냐, 매출액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대원칙만 법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대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은 다른 규정이 바로 인용되니까 가능한데 저희들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령 위임이 필요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5%인 기업, 기술우수 기업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별도로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제 이야기는 이미 법 규정에 이렇게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될 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드(fade)한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개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기업 그러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라 함은’ 하고 주르륵 풀어 갖고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지고, 5% 이상 중소기업……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아니, 5% 이 기업하고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뭘을 상정하고 있어요? 아까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

○류성걸 위원 기본적인 게 벤처 관련되는 사항

이 주라고 하면 또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나요? 이 제목이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조세특례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데 조세특례를 확장하기 위한 법인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국장님이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막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세특례를 제한하자는 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60조에 달하는 조세지출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넓혀서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의원 입법안에 동의한 부분 아니면 정부가 제출한 부분은 대부분 벤처와 청년 관련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벤처에 대해서는 찬성이요, 벤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지금 현재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엔젤투자자가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액투자자 아닙니까?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를 해 줄 때 단순한 벤처기업만 해 줘 가지고는 실제로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성 우수 기업이라는 개념을 현재 시장이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제휴의 경우에는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같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성걸 위원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돼 있는 것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없애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만 기존에 됐던 것 중에서 특례가 너무 많은 것을 줄여서 같이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 넓어진 데다가 기준을 맞춰 갖고 하겠다는 것은 자꾸 넓히려는 이야기고, 넓혀진 것을 줄여 갖고 균형을 맞추는 기준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그러면 이 안은 부동의예요, 동의예요?

○김수홍 위원 제가 제출했는데요 정부하고 한번 더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기술우수 중소기업 관련한 규정이 기술신보로부터 인증을 받고 한 기업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에 이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적용기한 연장은 동의 그다음에 적용대상에서 기술우수 중소기업 포함 여부는 확인한 이후 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정부는 현행 제도를 2년 연장하는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으로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건의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협의취득 시 보상방식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조세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토보상 시 감면율을 인상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안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100%의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인데요.

각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이용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5년간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정부안은 현행 생계형 창업지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 원 이하에서 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현행 제도에서 생계형 창업지원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대상 매출액이 현재는 4800만 원인데요, 지금 간이과세 기준이 바뀌어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8000만 원까지는 생계형 창업지원기업으로 봐서 지금과 같이 5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해 주는 그 제도를 확장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연장시한을 3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류성길 위원 연장 관련해서도 물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단순히 금액을 바꿈으로 해서 8000만 원으로 하면서 3년이 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되면 일몰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이런 기준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정부 답변이 제도 개선이 될 때는 3년으로 하고 또 단순 일몰 연장일 때는 2년으로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기한 자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 간사님 의견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3년 기준을 2년으로 원리원칙에 맞게끔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4800에서 80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기준이 올라가서 감면 총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류성길 간사님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년 연장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도 법안 만들 때 원칙 세우느라고 하다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니다, 저희 내부에서.

○류성길 위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확대하는 것은 2년으로 하고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류성길 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그것도 성격에 따라 다 다른 게 4800을 8000으로 올리는 게 정말 간이과세 기준금액 올리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 갖고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영진 수용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일영 위원 2년으로 한다고요, 정부안이 아니요?

○소위원장 김영진 2년.

3년이 기본원칙이 사실은 2년 연장, 2년 연장하고 그 기준을 4800에서 8000으로 올린 게 그래도 나름대로 감면율을 올려 주는 건데요.

○정일영 위원 정부에서 오래간만에 3년 해 준다는데 그것을 김수홍 의원안으로 굳이 바꾸려고 그래?

○류성길 위원 기본적으로 조세특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해야 돼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총괄국장인데 잠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발언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올해 이게 4800에서 8000으로 바뀌면요 22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는 23년에 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24년에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려면 2년 가지는 안 됩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2년 안에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800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3년이 필요합니다.

○정일영 위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부안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10항 동의합니다.

11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잠깐 우려사항 하나만……

작년에 간이과세 대상자를 4800에서 8000 올릴 때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4800에서 8000으로 올리면 매출과 매입을 다 파악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적용하는데 손실보상이나 이런 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한 게 4800에서 8000으로 올린다 해도 매출과 매입은 파악하던 것을 그대로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4800에서 8000 사이는 간이과세가 돼서 납부만 간이하게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것 잘 확인하셔야 기재부에서도 앞으로 할 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경우 지급기일별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 요건 완화, 대상 변경,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상생결제 제도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건도 완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생결제 관련해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안으로서 15일, 16~30일, 31~60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5일 이내에 하는 경우는 0.5%, 10일 이내에 하는 경우는 0.4%, 15일 이내에 하는 경우는 0.3%, 16~30일 하는 경우 0.2% 이런 형태가 바로 상생이지.

될 수 있으면 현금결제 또는 결제일을 당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날짜는 그대로 15일로 놔놓고 그것에만 한다는 것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어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80일 또는 1년짜리 주고, 지금은 어음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공제율을 높이면서 일자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경준 위원 질문 하나.

지금 요건 변화가 1·2 충족에서 하나로 됐는데 결제방식이 현금성 결제하고 어음결제 외에 다른 게 또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상생결제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금성 결제, 어음결제, 상생결제가 있는데 상생결제 할 때 추가로 혜택을 주자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건 1·2에서 현금 결제를 줄이고 상생결제로 해도 요건 완화를 하자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 말이지요? 요건 1·2 충족에서 요건 2만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 났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면서 대상 변경해서, 상생결제 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해 갖고 대상을 바꿔 주면 그 뒤 표에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없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물어본 거예요.

○류성걸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안으로서 15일 이내를 그대로 두고 16일~60일을 쪼개서 두 개로 한다면 15일 이내도 2개로 쪼개서 앞에 것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지급기일하고 공제율 이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류성걸 위원 뒤에 통계도 봤어요. 대부분이 30일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상생결제에 관련된 사항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한세율 적용 관련해서 최저한세율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최저한세율? 지금 제일 낮은 세율……

○류성걸 위원 법인세는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7% 그다음에 과표 구간별로 해 갖고 1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다음에 소득세는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개인은 35%, 45%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 35%, 45%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3000만 원 이하는 35%고요, 3000만 원 초과는 45%입니다.

○류성걸 위원 뭐의 35%?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이게 감면 전 산출세액입니다.

○류성걸 위원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는 최저 한으로 내야 된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감면 전 산출세액이 3000만 원 이하면 35%는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류성걸 위원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최저한세에 걸려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 버리면 최저한세가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저한세에 관련되는 사항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최저한세로 해 놔 놓고 이것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저것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빼 버리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항목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최저한세라는 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저희가 이 광재 의원님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찬성 안 하는데 그 관련되는 것을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 관련해서 소득세하고 소득세법에 나오는 것하고 법인세법에 나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해서 당연히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소득공제가 됐을 때는 거기 전부 다 걸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최저한세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도 거의 안 걸리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한 거예요?

지금 류성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급기일 구분은 15일 이내를 또 두 단계로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지금 류성걸 위원님의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줘 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이것을 세 단계로 한 이유는, 통상적인 중소기업 평균 지급 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2단계 구조에서는 16일~60일 사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지급을 하게 하려면 30일 기준을 쪼개 가지고 30일 기준 이하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는 좀 낮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15일 이내는 현행하고 똑같고 또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면 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일정 수준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하면서도 기업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평균 기준에 따라서 빨리 지급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15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두 개로 쪼개서, 10일로 하든지 아니면 7일로 하든지 해서 현금결제나 또는 상생결제를 빨리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면 더 빨리 되는 것이지요.

지금 평균으로 따지니까 30일을 따지지만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면 앞의 부분을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뒤의 것을 하는 것보다.

○고용진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류성걸 위원 당연하지요. 앞의 것을 해야 되는데 앞의 것은 놔두고 뒤의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고용진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나누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류성걸 위원 뭐 복잡해집니까, 세 개나 네 개나?

○고용진 위원 그런 것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사회자로서 의견 드리면, 기업이나 사업자로서 15일 이내에 결제하면 빨리하는 겁니다. 또 일주일로 자르면 제가 보기에 상 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3단계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사업해 봤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생각을 해 봐도 15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면 땡큐지요.

○류성걸 위원 원래 결제는 바로 하는 겁니다. 어음이라는 게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180일, 1년, 3개월, 6개월, 9개월 많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니까, 그 노력을 해 갖고…… 하면 대금 바로, 현금 결제 바로, 오늘 것은 오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 누가 시원하게 설명을 해 봐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저희가 아직 통계를 못 찾고 있는데 통계를 찾아 가지고…… 5일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금기 일 별로 통계를 찾아 가지고 두 개로 쪼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30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30일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당기려고 하면 앞을 프론트 로딩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일영 위원 나중에 사업해 본 분들하고 의견을 더 나누어서 다시 보고 한번 해 봐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뭐냐 하면, 사실은 정합성이 있어서 그러면 60일을 60분의 1로 자르는 게 더 정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현 제도와 또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 단위를 2분의 1로 잘라서 하는 부분에 관한 예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기는 것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단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의견을 내면요, 평균 3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15일 이내를 한 구간을 두고 30~60일을 없애고 하면 오히려 3단계로 해서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60분의 1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다음에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항은 중간에 12-1이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2항은 연구·인력개발비……

○소위원장 김영진 잠시만요.

12항은 약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4시인데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12항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오신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소위원장 김영진 간단하게,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오전 오찬시간 무렵에 진도가 많이 나가면서 추경호 의원과 또 저와 서로 발의했던 법안이 그냥 정부 측 의견대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잠정 의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세소위 위원들이 낸 법안이 있으면 그것은 또 곧 참여를 하니까 파악을 해 보고 뒤로 연기해서 논의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간사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요.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정부 측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 내릴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기한을 2022년까지 1년 더 연장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일몰 연장은 이 한 건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전반적인 친환경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기차나 수소차가 내년 말로 일몰이 연장되기 때문에 일단 1년을 연장해 놓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게 낫겠다 하는……

○고용진 위원 자, 현실만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전기차·수소차도 계속 일몰을 뒀다가 연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기차·수소차는 아마 당분간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계속 연장이 될 걸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차에서 배제를 하고자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저공해차에서……

○고용진 위원 저공해차에서 배제하는 걸로. 일부에서는 친환경차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산업부하고 이견도 있고 정부 간에 이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의 친환경차 중에 80% 정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예요. 그리고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단계의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그래서 1년만 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논의에 있어서 지금 전기·수소차가 자생적 시장을 갖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기능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으로 볼 때는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아직은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에 논의하자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서 1년만 우선 연장하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했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평균납기가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사실상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부터 차를 사면 그다음 해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개소세 연장 혜택을 못 받아요.

설사 정부에서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장을 1년만 해 버린다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승용차 업계에서는 지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수 우려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못 사게 되면 내연기관차로 옮겨가겠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1년 연장은 첫째, 의미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우리 친환경차량 산업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4년 했고 추경호 의원은 3년 했는데 적어도 납기 10개월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연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결국 1년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고 체계를 맞춰서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주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의사 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점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걸 참조해서 기재부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추후 논의 때 추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잠정 의결이지요.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12항 설명해 주시고 또 12항 관련해서는 반도체 협회, 전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참석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좀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참석하신 분들 명단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번하고 중간에 간지로 된 12-1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10조와 관련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안, 그다음에 적용기한 연장하자는 부분,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자는 부분입니다.

다음 24조 관련해서는 신성장사업화시설 관련 공제율 상향 부분이 있고요.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 별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건데요. 좌측 부분

은 이걸 개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좌측 부분이 신성장·원천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 지금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비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비로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기존 자료하고 새로 나눠 준 것하고 어떤 관계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금요일 뒤쪽에 조특 논의할 때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신성장, 국가전략기술 신설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앞쪽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뒤쪽에 있는 게 앞쪽으로 와서 오늘 한꺼번에 다 논의가 되는 거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이것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재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신성장 이렇게 두 단계로 돼 있는데요. 최근의 국제 흐름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기술 패권, 그다음에 공급망 경쟁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국내 생산망 확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은 세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일반 신성장 외에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백신 이런 분야가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분야 내에서 해당되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

면서 3년 연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국가전략기술을 새롭게 신설하고 24년 말까지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대한 이 부분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플러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 이 부분을 별도로 신설하고 공제율이라든지 지원 수준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안 중에 반도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국가전략기술 여기에 다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복잡한데다가 갑자기 또 한 장 더 쥐 가지고 되게 복잡해져 버렸는데.

정부안하고 의원님들 안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클리어하게 해 보세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1 이것은……

○정일영 위원 12-1은 나중에 하고, 그 앞의 순서대로 원래 있던 연구·인력개발비 거기부터 순서대로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R&D 비용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별로 이렇게 공제율을 달리해서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공제율을 조금 더 올리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자근 의원님, 김경만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은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이 지금 30, 25,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각각 조금 더 올려 주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원천기술 적용기한을 구자근 의원님은 23년 그다음에 김경만·정태호·정부안은 24년, 3년으로 연장하는 게 되겠고요.

○정일영 위원 미안한데, 의원님들 안이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정부 입장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전략기술 신설 김경만 의원안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정부안은 그 밑에 있습니다. 당기분 같은 경우

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라고 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증가분 4% 이렇게 하는 게 정부안이 되겠고요. 김경만 의원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정일영 위원 실장님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정태호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이런 것은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것 합해서 지금 얘기한 이 안건의 두 번째에 있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 이것만 정부에서 받겠다 그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다른 건 다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반도체 공제율 상향, 반도체 세액공제 특례 이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한국전지협회 구회진 사무국장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셨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2분 정도씩 간략하게 오늘 이 법안에 관련한 각 협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현 전무님 얘기해 주시지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입니다.

저희 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세액공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쪽 법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략기술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울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추가를 하면 하는 것이 반도체 제조시설은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품이기 때문에 한 20년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략기술의 생산과 비전략 기술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데요. 지금 조특법에는 전용시설만 해당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해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다음 한국전지협회 구회진 사무국장님.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지산업협회 구회진입니다.

사실 요즘에 전지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게 됐고 이렇게 법안 심의에서 다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지 쪽을 보다 보면 사실은 국내에서 과연 얼마를 지원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전지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억 유로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미국은 60억 불 현금 지원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입지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리튬 2차 전지를 제일 처음 상용화를 해 가지고 20년 만에 1등을 뺏겼고요. 2011년에 1등을 뺏겼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1년 11월에 1000억 엔이라는 추경예산을 신설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신규 설비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쪽 분야 그리고 반도체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 장병원 장병원 부회장입니다.

먼저 백신 분야의 세제 확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과 제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 산업임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백신이라든지 제약의 자주권, 주권 확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을 비롯해서 재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 예방을 하려고 하는 백신 종류가 28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백신 자급률이 14종에 불과합니다, 근 50%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신을 만들고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16%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25%, 30% 수준에 가까웠는데 최근에 굉장히 자급률이 낮아지는데 그

원인들이 생산원가들이 굉장히 비싸지고 대신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을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임상에 들어가는 R&D 비용이 최소한 2000억부터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제약기업들의 수주는 1위 하는 셀트리온이 1조 8000억 매출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약 90 위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1위 기업인 화이자나 머크 같은 회사는 1년의 매출액이 50조 원 가까이 되고 R&D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력을 과연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하나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아일랜드라든지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제약 선진국으로 굉장히 컸는데 그 내면을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같은 데는 법인세를 완전 없애거나 10% 이하로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미국의 화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계 최초로 mRNA 백신이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이 작년 한 해 지원한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규모로 볼 때는 재정지원뿐만 아니고 세제지원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걸림돌도 없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백신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여러 의견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우선 정부 측에, 이게 요약한 거라 그런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 10조는 현행 유지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0조는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일영 위원 김정만 의원, 정부안 되어 있는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부안. 이게 R&D인데 거기 40, 30, 10 이게 정부안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 이게 정부안이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 밑에 통합투자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게 사업화시설 부분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24조는 구자근 의원안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정부·홍정민 의원안이 정부 입장이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협회에서 설명하시고 한 바이오·반도체 등등이 해당되는 것은 10조, 24조 다 해당되는 거예요, 24조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다 해당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10조는 R&D고요, 24조는 시설.

○정일영 위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이게 지금 세 협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합의가 된 안인가요?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의견을 듣고 참고를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완전히 합의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끝났구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세 협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퍼센티지지요, 단위가? 다 생략돼 가지고.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이 정부안 아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이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동의한 걸로 보고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 장병원 바이오 업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바이오에서는 다 동의하셨다고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 장병원 예.

○정일영 위원 반도체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이 정도면 돼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 측 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오신 분들도 됐다고 그러시고.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 저도 질문 겹쳐서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정부안은 원래 10조와 24조가 있는데 정부안은 백신·반도체 등을 통합해 가지고 하여튼 국가전략기술로 해서 좀 큰 틀에서 혜택을 주고 규율을 하겠다는 건데 10조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반대하는 거지요? 반대하고 24조만, 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부안과 홍정민 의원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통합투자 세액공제라는…… 통합이라는 말을 쓴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원래 2019년까지는 투자세액공제가 개별 시설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대·중소기업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개별 시설을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통합, 모든 투자세액공제를 몰았다라는 의미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유경준 위원 그러면 10조와 24조를 합한 개념이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조는 R&D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24조는 이 R&D 시설을 사업화할 때 시설투자하는 곳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다른 제도입니다.

○유경준 위원 다른 제도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0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10조도……

○유경준 위원 10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0조도, 이 표가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주 심플하게 국가전략시설에 대해서 R&D에 투여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 시설투자하는 것도 세액공제해 주고……

○유경준 위원 그런데 정부안으로 지금 24조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해 가지고 24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 이 안에 이게 세액공제하고 10조와 24조가 함께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24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안이 2개인데 2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국가전략기술 신설’ 해 가지고 정부안이 하나가 있고 이걸 R&D 세액공제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유경준 위원 아, 있네요. 오른쪽에 있네요. 내가 이걸 못 봤어요. 못 봐서 10조는 안 하겠다는 건 줄 알고 내가 확인했는데, 있네.

○박형수 위원 정부안이 유경준 의원안하고 똑같이 돼 있네.

○유경준 위원 아, 그러네. 내가 확인을 못 했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자세한 표를 아주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 동의하셨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아까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전략·비전략기술이 통합해서 진행되는 경우 전용시설 라인만 완화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겸용은 현재 안이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현재는 그게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같은 경우에 일반하고 신성장하고 같이 연구원을 썼다 했을 경우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경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복잡하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조세회피, 조세회피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좀 저희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현재……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하신 것도 중

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용시설일 경우만 받는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겸용했을 때는……

○정일영 위원 전용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전용만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90%가 돼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100% 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나도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흥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흥 위원 이게 10조의 R&D하고 24조의 시설투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습니까? 수도권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에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가 50%가 넘는데 며칠 전에 국가균형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는 법으로 아니면 국가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우리 차관님 말씀하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과밀화는 한 10% 내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0%가 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양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비혼율의 상승이라든가 1인 가구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교육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이걸 정부가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육성·양성한다는 측면으로 수도권의 과밀화 공포, 지방 소멸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출해서 반도체·2차전지·백신의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보면 그러면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 이게 합

리적인 정책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방 의원들과 서울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멈추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그냥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세요.

중전에는 R&D 투자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글로벌 경쟁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사업화시설에.

○김수흥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뭘 투자를 했습니까?

외국은 이렇게 합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 하면요,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상속세도 엄청나게 감면해 줍니다, 지방으로 갔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치하면서 국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상생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총리나 부총리나 모든 분들은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경준 위원 추가로 법을 하나 발의하시지요. 발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안 돼요, 시골 사람이 하면 안 돼.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하세요.

○류성걸 위원 지금 10조는 R&D고 24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R&D, R&D 관련된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혁신을 해야 전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그 생산성이 바로 경제성장과 연결이 되고, 경제성장을 해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와 또 시설투자에 대한 그런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D 관련해서는 지금 표가 좀 헛갈리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내놓은 책자 있지요, 소책자? 조그마한 것,

요약돼 있는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것 있으면 한번 쭉 보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봐서, 지금 이것 보니까 좀…… 그 자료 있나요? 한 40~50페이지 되는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반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을—R&D도 마찬가지로 시설도 마찬가지로—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해서 두 가지 단계로 돼 있던 것을, 두 종류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세 종류로 늘리면서 R&D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또 통합시설투자, 시설에 대한 것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가전략기술 신설에 대해서 왜 반도체와 배터리와 백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혜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차관님, 조세지출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8000억.

○류성걸 위원 한 80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이번에 전체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 1조 5000 중에서…… 1조 5000억 맞지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1조 5000억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오늘 논의하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에 의해서 조세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조세지출 차원에서 세액공제나 또 소득공제나 이렇게 해서 조세지출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논의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서 조세라는 게 공평성과 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디스토션(distortion)을 없애자 또는 편리하게 하자, 예측 가능성 있자, 그다음에는 규정에 따라서 하자 뭐 이런 조세의 기본원칙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세제실에서 또 기재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첫 번째는 국가전략기술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소책자 가져오라고 한 게 거기에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만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한정적으로 세 가지만.

○류성걸 위원 세 가지만 하는 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체 공제율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신성장하고 일반하고 신성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40%, 코스닥 중견은 30% 기본으로 그다음에 수입 관련해서는 1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게 보면 R&D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를 했을 때 시설투자액이 1조 원이라면 거의 1조 원의 50%가 5000억이 조세지출로 조세감면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가 돼요. 이것은 사실은 따져 보면 지금 물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 외라는 게 대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조세 부담 관련해서 봐서도 이제까지는 조세 감면액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된 게 최근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1조 5000억 중에서 8000억 이상이 이 조항 한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백신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만 국가전략산업이냐? AI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물론 AI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안 들어가는 부분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백신은 국가경제·안보적으로 긴요한 기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기술패권하고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공급망……

○류성걸 위원 자,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AI, 로봇, 드론 그것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뒤에 신성장·원천기술이라는 카테고리로……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지원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원을 안 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계속 하지만 지원을 안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데드웨이트 로스(deadweight loss)라고 하지요, 사중손실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하는 것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 기술 자체,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사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금 자동차 생산 관련되는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한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세 가지냐,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AI, 드론, 자율주행차 등등등 해 가지고 그 기술이라는 게 물론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continuous)하게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으면 차등을 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세 개만 달랑 떼어 가지고 여기에 최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시설투자의 40%를 세액공제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액공제 그제 안 되면 이월도 될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월도 해서 뭐 5년인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을……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것 하고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EITC 관련된 사항하고는 사실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쟁점, 왜 세 가지만이나, 그다음에 사중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형평성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크게 이런 형태로, 물론 R&D라든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도 대부분이 세액공제나 포함한 조세지출로 이루어졌지만 조세지출 말고도 전부 다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 쪽으로 했을 때 차이는 뭔지, 그렇지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뭔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형평성 관련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충 과거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 또는 세법 개정안 이렇게 냈을 때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 보면 부담 경감되는 비율이 중소기업·취약계층 또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뭐 많이 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투자 규모와 또 R&D 비용 지출 규모가……

○류성걸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당연하겠지요. ‘투자를 해 가지고 세액이 있으니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것도 마찬가지로요, 소득세의 누진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지 거기에 따라서 세액공제하게 되면, 아니면 뭐 소득공제하면 더 크니까 이제 세액공제로 바꾸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아주 심플한 것 한두 가지만 우선……

구회진 사무국장님, 협회 이름이 한국전자협회예요, 전지협회예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입니다.

○정일영 위원 ‘전지’이지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배터리 산업협회, 전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전지협회 국장님 같은데 여기 타이핑해서 갖다 준 데에는 ‘전자’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왜 여쭙보냐면 아까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중요한 첨단 미래산업들인데요,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지협회의 전지에 수소연료전지 그것도 포함되나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저희 쪽에

서는 수소연료전지까지는 하지 않고요.

○정일영 위원 그건 아니고요, 배터리형 리튬?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리튬, 2차 전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부연설명을 잠깐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과 지방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건 제가 한 것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나중에 김수홍 위원님한테 자세히 따로 설명하시고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정일영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옆에 계신데……

○류성걸 위원 아까 그리고……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입니다. 잠깐 정리, 정리.

○류성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 우리 배준영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일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하고 좀 연결선상인데요—정부 측에 여쭙는 겁니다—24조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원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됐냐 안 됐냐예요, 아니면 그 기술을 어떤 기술을 썼는지 나오는 상품이 기준이에요? 기술이 기준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기술이 기준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겠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국가전략기술이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비적용되고 한 제품, 반도체 제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투자, 그러니까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전용시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래서 이걸 제가 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께 여쭙고 싶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전용시설, 그러니까 국가전략기술이 100% 적용돼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 시설에 대한 투자만 이 혜택을 보잖아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반도체가 생산되는 현장에서 국가전략기술만 100% 적용되는 그런 생산 시설하고 전략기술이 아닌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생산되는 반도체하고 현장에서 비율이랄까 현실은 어때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전략기술 전용설비가 10% 정도 비중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작은 회사까지 있는데 5% 이내입니다.

○정일영 위원 어떤 게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전략기술의 전용설비가 5% 이내, 그러니까 95%는 겸용 설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정일영 위원 그러면 95%는 여기의 혜택을 못 받네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못 받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그 기술이 얼마나 핵심기술인지 아닌지, 50%씩 적용된다든지 전문가들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을 내서서 해야지. 90%는 혜택도 못 받고 특히 여기 중견·중소 기업들이 더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세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중소·중견 기업은 비율이 더 낮습니다.

○정일영 위원 낮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고 정부 측도 이렇게 해 봐야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적게 받고 다 합해도 90%가 못 받고 그런다는데, 이것 문제가 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감이 8000억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하고 커버리지가 그만큼 넓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갑자기 굉장히 초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선불리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라인들이 새롭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는 거고, 기존에도 왕창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것,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일반 세액공제, 신성장 그런 걸로 해 주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하겠나 그런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말로는 이게 다 무슨 큰 혜택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논리면 대기업들이 대규모 100%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이 100% 적용되는 최첨단 대규모 시설, 그건 결국 대기업들이 할 거고 그 대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같이 연계해 있어서요.

○정일영 위원 중소기업들은 돈도 없고 현실에 보면 별로 이렇게…… 90% 이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거기에 납품하는 생태계에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또 각 단계별로 무슨 부품을 하고 뭘 하기 때문에 다 세트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일영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기준을 딱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안 맞아요.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전략기술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100%가 됐든 95%가 됐든 해야지, 세수를 걱정해서 100%만 하고…… 기술을 적용하는 게 100% 95% 이게 나누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론 내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연구하셔서 다음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가만있어 봐요. 얘기하는데 왜, 아까도 그러더만 자꾸 위원 얘기하는데 막 나서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해도 돼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제가……

○소위원장 김영진 됐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음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래서 아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제가 그대로 적었어요—전략기술과 비전략 기술 완화를 요망한다, 요청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

○류성걸 위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류성걸 위원 어떤 기준 말입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세액공제 대상이 전용설비만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겸용 설비가 90% 이상이거든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고 했을 때, 물론 세부적인 기준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재부에서 관련되는 자료 간단한 것을 요약 정리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 R&D만 보더라도 대기업 경우 30~40%, 중소기업 40~50%.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 24쪽에는 정부안에는 50%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나 싶은데, 50% 어디 있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상단에 보시면 정부안 기본이 40이고요 수입금액 비중별 한도가 10인데 합치면 최대 50이라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아, 예.

숫자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물론 전략기술이라는 건 말하여 전략적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전략기술이 수십 개 수백 개 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을 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이외의 전략기술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도 대기업은 20~30%—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다음에는 기재부가 만들었던 자료 8쪽에 보면 아주 진짜 눈에 쪽 들어오고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했을 때 8쪽에 그게 나오니까는 사실 중견기업의 경우에 신성장·원천기

술을 특허권을 하고 이런 예를 아주 잘 들어놨더라고요. 정리를 굉장히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전체 R&D가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 또는 재정지출에 비해서 더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내부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게 재정지출 관련 이만큼 투입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재정지출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걸 검토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저희는 재정지출로 할 수도 있고 조세지출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세액공제를 해 주면 유저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유저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R&D든지 투자든지 간에 증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증연구 있지 않습니까?

○류성걸 위원 사용자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R&D를 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도 사용자 비용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세출 쪽으로 해서 지원해서 보조해 준다든지 했을 때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다음에 실증적인 것들이 있는데 OECD도 있고 KDI도 있고 조세연구원도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마다 탄력성은 다 다릅니다. 파라미터값들은 다 다른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자, 그래서 아까 전지산업에 관련되어서 구회진 사무국장께 제가 한 말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문처럼 들리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형태의 지원을 안 해 주면 배터리 투자 안 하실 겁니까?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위원님, 굉장히……

○류성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잠깐만요, 여기서 답변하시고 하는 게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전략산업으로 하지 않으면 산

업 쪽에서 투자를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지요, 너무 길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류성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오신 분이 진술인이세요, 아니면 참고인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참고인이네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소위원장 김영진 참고인도 아니고요, 그냥……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 제가 아까 여쭙봐도 되겠느냐고 먼저……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여쭙봐도 되겠느냐고 했더니만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권한은 없어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예.

○류성걸 위원 아까 제가 여쭙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쌀값을 안 깎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커진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보면 탄소제로의 어떤 핵심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별로 지원하는 거고……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쭙볼게요. 또 여쭙봐도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유저 코스트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위당 시설투자 관련해서 R&D는 제외하고 시설투자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 유저

코스트가 지원 안 했을 때 1원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 드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그 답은 제가 명확히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류성걸 위원** 나중에 한 번……

○**한국전지산업협회사무국장 구회진** 물론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 배터리 분야 대기업이 한다는 게 사실은 25년까지 제가 투자액으로 보면 한 8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부장 업체들, 중소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지금 5조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원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어느 산업이 클 거냐, 왜냐하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다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인데,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보시겠지만 양극의 엘앤에프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 시장을 보고서 파격적인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금액은 추후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자, 그러면 정부에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제일 서두에 첨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과정 속에서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투자의 요인 중에서 결국은 유저 코스트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코스트를 어느만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 유저 코스트 관련.

두 번째는 세계 주요국의 투자 유인책, 미국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느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과 또 국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거고 또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조세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규모가 워낙 커요.

차관님, 이제까지 조세지출 중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굉장히 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보니까 이렇게 큰 조세지출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상당히 논의가 길어지는데요.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수홍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류성걸 위원님 아까 여쭙보신 것 하나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사업화되는 시설 투자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 그냥 제조기업 자체에 대해서 10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받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대만의 특정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4조 원 정도를—이것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 25% 세액공제 법안 지금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류성걸 위원** 예, 실장님 알겠어요. 그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각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김수홍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근본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걸 신설한다 그랬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이 아까 반도체·배터리·백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규정합니까? 법률에 규정합니까, 시행령에 규정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구체적인 기술들이 시행령상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선정이 돼서 나열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는 ‘국가전략기술’ 이렇게 한 줄만 넣고 ‘국가전략기술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안을 만든다고요?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박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게, 법안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기술입니다, 아주 세세한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몇 나노……

○**박형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물어보려는 것을 이미 다 대답하고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이라고 개념 정의만 법률에다가 두고 나머지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인 걸 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사 이래로 이런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1조 50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시행령으로 하면 그 결정을 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것,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저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백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지원을 주는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국회와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논의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만 들어 보더라도 겸용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거 뭐 하려고 만드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틈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겸용과 전용의 규정 자체가 그렇다라면 퍼센티지로 규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투자액 중에서 전용이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이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까 반도체투자협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도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업종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나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 등등 이런 업체들과 이런 논의를 해 봤는지…… 아까 얘기하기로 여기 나온 세 가지 업체들하고는 소통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 외의 다른 기업들하고는 이런 논의를 해 봤는지, 우리가 이런 규모의 법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도 같이 논의를 해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

고 이런 걸 우리가 논의 기구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차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삼성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특구 700만 평에 최소한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전라북도와 MOU 체결한 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김수홍 위원**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때 말인가 철회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때 철회하면서 삼성이 국회에 와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삼성의 신규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 새만금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안기현 전무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5대 기업은 어디 어디 입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5대 기업 말씀입니까?

○**김수홍 위원** 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5대라는 표현은 제가 잘……

○**김수홍 위원** 매출로 하든 투자로 하든 5대 대기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아, 거대 기업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김수홍 위원** 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전체 산업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김수홍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인가 이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지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김수홍 위원** 얼마입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22조…… 정확히 한 20조 이상 되는 걸로……

○**김수홍 위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 소외 지역에서는 왜 삼성은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이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보조금이나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미래의 투자 계획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국외 투자 계획은 미국 삼성전자 투자 외에는 지금 없고요.

○김수흥 위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 22조입니다.

○김수흥 위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오는데 10년간 124조 투자 계획이지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김수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다른 지원시설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뭐, 꼭 그렇지 않은데요. 어쨌든……

○김수흥 위원 제가 하나 또 여쭙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코로나나 경제위기 상황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면 투자할 수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 8000억 중에 그러면 반도체에는 얼마 정도 갑니까, 투자세액?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수흥 위원 모릅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안기현 전무는 공무원 하다 가셨습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아닙니다. 저는 SK하이닉스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협회에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내유보금이 수천조 있는데 그 수천조를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정말 전부 투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는데도 지금 반도체 업체에서는 전략기술하고 비전략기술로 나누어 가지고 전용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고 겸용은 안 해 준다고 더 확대해 달라

고 하는 게 저는 대기업이 양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일단 저희가 이 이슈가 제기된 것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면 세액공제를 40% 해 주겠다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뒤가 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투자를 한 국가나 기업 중심으로 가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축이 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흥 위원 알겠고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선발 국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 여력을 더 갖자라는 차원에서 세액공제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도체뿐만 아니고 2차전지나 백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서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겸용 장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대상 자체가 겸용 장비가 아니고 전용 장비만 해당이 되면 반도체는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흥 위원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요구나 이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가서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북은 반도체라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왔으니까 이런 제도가 되면 삼성도 전북한테 신규 투자수요가 있으면 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전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투자 수요는 전북에 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 안기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들어가세요.

지금 이 항 관련해서는 1시간 정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취지와 내용 그리고 반도체·배터리 그다음에 백신 업계에서도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 법을 발의했었던 정부와 홍정민 의원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배터리·백신에 관한 현재의 선도적 투자와 이것이 없이 그냥 하지 않으면 이후 선도적 경제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전체 산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실은 선택적인 전략이지요.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한데 특히 세 분야는 사실 경제의 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판단과 선택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R&D 투자와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견해들은 다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류성걸 위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 절차와 관련된……

○소위원장 김영진 오늘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인데요.

○류성걸 위원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차관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저도 R&D를 직접 담당을 했고 그런데, 이게 시설투자는 R&D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류성걸 위원 지금 앞에 있는 게 R&D인데 R&D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정부 내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또는 R&D 관련 절차 이렇게 할 때에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으셨지요? 어떤 절차 거치셨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저희가 이것 할 때요 관계부처 의견, 관계부처……

○류성걸 위원 제가 R&D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R&D 관련되는 절차는 어떤 것 거쳤나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관련되는 사항들을 분석적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 다른 나라에 관련되는, 절차에 관련되는 또 더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아까 좋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유저 코스트

관련된 사항 당연히 해야 되고 데드 웨이트 로스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형평성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효율성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더니만 이것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 제가 한 대여섯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하자 하니까 전략적으로 투자하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판단이 됐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고 또 협회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반도체협회 전용과 겸용 관련한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구분 경리의 문제,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때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음번 회의 때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협회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관련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대여 대상에 중견기업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요, 연장은 2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14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지역특구 입주 기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제주자유무역지구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는 것이고요. 정부안에는 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2년 단순 연장이고요. 다만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15항 설명.

○류성걸 위원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왜 연장하지 않기로 하시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역 자체가, 아직 지정된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정이 안 됐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3건의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 김경만 의원안은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의견, 정부안은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는 지분을 순차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요건을 완화하면서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상향 및 기한 연장입니다.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1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경영성과급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의 없으면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박형수 위원님……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보다 더 많이 연장하는 거라서……

○박형수 위원 저도 연장하는 건데 정부안은 더 많이 연장하는 거라서……

○소위원장 김영진 예, 더 많이 연장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지금 19조 제1항, 전체 세액공제액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59억입니다.

○류성걸 위원 1항하고 2항하고 두 개 합쳐서 59억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5건의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김경만 의원안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상향, 정부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제액을 2021년 및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지성호 의원안은 우대지원 대상인 취업 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고용중대 세액공제에서 지금 지방 청년들 같은 경우, 취약계층 같은 경우 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게 되겠고요, 연장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1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이것은 어떻게, 북한이탈주민 추가 안 하는 걸로 합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근

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20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1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약간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고요, 연장기한은 1년입니다. 이것은 빨리 정규직 전환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2년까지 늘리지 않고 1년 단순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한 가지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상시근로자 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수만큼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기업들이 그것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최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단서를 넣은 건데,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정규직으로 해서 세액공제 받아 먹고 또 정규직은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악용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류성걸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것은 실장님 말씀도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진짜 사중손실의 아주 전형적인 악용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마치 그냥 옆에서 세제지원해 주니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규직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숫자만 맞추고 그러는 것은 뭐 그게 그거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정규직의 숫자는 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 상시근로자 수로 하면 아까 세제실장 말씀하신 효과는 안 나지요. 상시가 상용과 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용과 임시를 합한 거고 상용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말씀하신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임시나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를 막으려고 그러면 정규직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확실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것은 통과하고 그 관련한 사안은 정비하겠습니다.

19항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통과하고가 아니고 관련되는 것을 해서 통과하도록 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조건을 넣자고요?

○류성걸 위원 예, 넣어야 돼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영진 한번 그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제가 류성걸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그림상으로는 계속 정규직을 늘려 가면 계속 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건 정도는 저희가 두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그렇게 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 지나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진술인인지 참고인인지 말씀이 ‘뭐 안 하면 뭐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지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부 다 조세지출로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놔 놓으면 세입으로 돼서 재정지출로, 예산의 지출로 나가야 될 돈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지금 세입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을 꼭 짚

어 봐 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경준 위원** 잠깐만, 세제실장님 말씀이 불명확한데 이게 지금 정규직 전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보다 추가적으로 정규직을 증가시킬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상시근로자가 맞는지 상용근로자가 맞는지……

○**유경준 위원** 안 맞아요, 그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유경준 위원** 상용도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늘어날 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재논의할 때……

○**정일영 위원** 그것은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시근로자 개념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자기네 정규직 직원도 있는데 아웃소싱 직원들 있잖아요, 협력업체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이 꽤 있는데, 편법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상시근로자에 들어가기도 하거든. 똑같이 상시 일하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념을 좀 명확히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조건을 한번 정비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그것을 정비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해서 5건의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는 현행 제도를 연장하는 건데요,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이런 사후관리 강화 조항을 붙여서 3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여기도 지금 상시근로자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추경호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특례 대상 기관을 변경하여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특례 대상 기관을 실제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명확히 한 후에 3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특례에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였네요, 그렇지요? 명확하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나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류성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21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논의했던 부분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7건의 개정안은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 정일영 의원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동 특례를 적용하자는 안이며, 3건의 개정안은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 장짜리, 오전에 논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때 적용기한 연장이 3년입니다. 그 내용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 관련입니다.

두 건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유턴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이런 것들을 더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해외에서 복귀할 때 국내에

복귀하는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세·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했던 관세, 이 세 가지가 다 패키지가라서 저희들은 3년 연장 기한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발의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정부 측 입장을 얘기 안 했는데요, 지역 요건 완화. 기한은 지금 말씀하셨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지역 요건 완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아니요. 차관이 얘기해야지, 이것을 왜 갑자기 국장이 나서 가지고 그래요. 아무 때나 나서지 말고 담당 국장 좀 이따가 해요, 이따가. 차관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있네, 차관·실장은. 검토도 안 하고 왔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 주신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복귀 기업까지 세액감면 적용하자는 건데요, 이것은……

○정일영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수도권에 있지만 그중에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데는 포함하자 그 얘기예요. 다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은 똑같은 혜택을 주자.

아니, 생각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왔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수혜 대상이 시흥지구 1개소에 불과해서 실익이 좀 크지 않다는 것도 내부 평가입니다.

○정일영 위원 어디만 해당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시흥지구, 한 개.

○정일영 위원 시흥지구는 최근에 된 데고 인천에 있는 송도 영종 청라 여기가 다…… 배준영 위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 버렸네. 그것 다 거기에 해당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정일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확실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래서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게……

○정일영 위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 제가 발의한 것을 받아 주는 거나 똑같은데 이야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거기서 시흥 배곧 지역만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정일영 위원 시흥 배곧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것은 최근에 조정식 의원 뭐 해 가지고 된 데인데요. 거기보다 먼저 된 데가 송도, 바로 건너에 2km 떨어진 송도 지역이고 한테. 확실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해당된다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정일영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이것을 왜 발의했나 하면 재작년에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리쇼어링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요. 실제로 리쇼어링이 얼마나 됐어요? 기업들이 몇 개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거의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 거창하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별로 못 들어 봤어요.

누구 아는 분, 국장이든 누구든 이제 답변을 해 봐요. 이게 몇 개나 돌아왔어요, 리쇼어링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래도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18년에 9개였는데 19년에……

○정일영 위원 18년은 코로나 전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18년에 9개, 19년에 16개, 20년에 24개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6개. 그래서 조금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기업 중에…… 작년에 몇 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작년에 24개.

○정일영 위원 24개 중에 수도권으로 몇 개 들어오고 비수도권으로 몇 개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94개 기업이 유턴했는데, 지역으로 보면……

○정일영 위원 국장님, 내가 질문한 대로만 답변해요, 헛갈리게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지역으로 보면 인천이 6개입니다.

○정일영 위원 24개를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4개에 대해서만…… 자꾸 코로나 전후, 뒤죽박죽 만들지 말고. 차관이 24개라고 했으니까 내 질문은 24개 중에 몇 개가 수도권이고 몇 개가 비수도권이나, 그것만 답변을 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경기가 11개, 인천이 6개입니다. 수도권이 17개입니다.

○정일영 위원 수도권이 17개?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나머지는 비수도권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수도권이 17개, 7개가 비수도권.

그 17개 중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경기가 11개, 인천이 6개.

○정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몇 개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인천이 6개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 추정컨대 인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정일영 위원 경기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경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없고 그렇거든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고 없고 그런데, 결국 이 11개가 있는 데도 가고 없는 데도 갔나요? 그것 구별해 봤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분을 못 했는데요, 들어온 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 세제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안 받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개나 되는지 보려고 그래요. 이 혜택이 효과가 있는 혜택인지 아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몇 개나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인천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네, 혜택 안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 왔네요, 혜택 안 보고.

○정일영 위원 그 자료를, 좀 뭐한 것 같은데, 2019년·2020년·2021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권역별로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게 혜택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송도 같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확실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일영 위원 확실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본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그 성과는 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최근 한 이삼년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박형수 위원 혜택을 본다면 김수홍 위원하고 저하고는 못 보도록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는데.

○김수홍 위원 제가 하려다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현재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고요. 제가 보기에 현재 속도로 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목요일 날 회의를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밥 먹고 합시다.

○류성걸 위원 오늘 더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오늘은 사전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또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별도로 목요일 날 회의를 진행하고요, 겹치는 소위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선택해서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쭙볼게요.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수홍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박형수 위원님이 지금쯤은 김수홍 위원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유턴기업 정책은 원래 수도권에는 세제나 투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언제 풀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경제자유구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홍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세제실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김수홍 위원** 언제? 그래서 지금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원래 주얼리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특구로 지정해 주고 지원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씨가 말라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런 정책을 지원해주니까 정부가 지방소멸을 더 재촉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류성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또?

○**류성걸 위원** 지금 소위원장님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소위원장 김영진** 아닙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협의는 하는데, 물론 지금 시간이 되어서, 6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관련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면 저녁식사를 하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일정에 있어서 날짜를 새로 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회의가 아침에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조금 속도가 또는 관련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을 다른 날짜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재위 전체위에서도 하루 건너씩 조세소위가 있도록 하고 그 중간에 없는 날에는 경제재정소위가 미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역원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고 용 진	김 수 홍	김 영 진	김 주 영
류 성 걸	박 형 수	배 준 영	양 향 자
용 혜 인	유 경 준	정 일 영	

○청가 위원(1인)

박 홍 근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 명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이 역 원
세 제 실 장	김 태 주
조세총괄정책관	고 광 호
소득법인세정책관	정 정 훈
재산소비세정책관	박 금 철
관 세 정 책 관	김 재 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진 무	안 기 현
한국전지산업협회 사 무 국 장	구 회 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 회 장	장 병 원